

전문위원 검토보고

(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)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□ 제안 이유

- 각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개정으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, 사립의유치원·초등학교·특성화중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·각종학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,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하며, 전학·재입학·편입학 및 휴학 후 복학

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을 정함(안 제3조).

-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·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(안 제4조).
-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,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하고,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에 의한 납부는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5조).
- 과오납·전학 및 기타의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 방법을 정함(안 제6조).
-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으며, 퇴학처분자와 자퇴한 자의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7조).

□ 검토 의견

- 동 조례안 제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 『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』 의해 운영되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이 2005. 3월 25일 초·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안 제4조제1항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의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에 위임함에 따른 세부 기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